

전주지방법원 2022. 9. 21 선고 2021가단290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

담당변호사 이학운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혜성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

담당변호사 박지원

변 론 종 결 2022. 8. 17.

판 결 선 고 2022. 9. 21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. 11. 30.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B에 대한 채권

- 1)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한다)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, 이에 D는 2017. 2. 28. 및 2018. 11. 28.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 B은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.
- 2) D는 2019. 3. 21.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. 이에 원고는 2019. 6. 5. D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E에 947,374,690원을 변제하였다.
- 3) 원고는 2019. 11. 4. 대구지방법원에 D와 B을 상대로 연대하여 947,715,93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. 11. 5. 지급명령을 받았고, 2020. 2. 7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
나. B의 처분행위

B은 2018. 11. 30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가 발행한 별지 기재 비상장주식(총 20,000주의 발행주식 중 5,800주, 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주식증여계약'이라 한다). 피고는 2019. 2. 26. 전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325,815,000원(1주당 56,175원)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.

다.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상태

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당시 B이 소유한 부동산은 없고 이 사건 주식이 유일한 재산이다. B은 2018. 11. 30. 기준 여러 금융기관에 합계 1,552,874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2022. 6. 24.

기준 1,550,095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, 을 제6, 7호증의 각 기재, F장의 신용정보회신, 법원행정처장의 사실조회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7. 2. 28. 및 2018. 11. 28.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, 주채무자인 D는 2019. 3. 21.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2018. 11. 30.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역시

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
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, 5호증, 을 제3호증의 1 내지
7, 을 제6,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, 피고가 제출한
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

① 원고는 2021. 12. 17.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1카단12644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
받았고,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다. 피고는 위 가압류이의신청서에 B으로부터
2018. 11. 30.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기재하였다.

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. 2. 26. 전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325,815,000원(1주당
56,175원)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.

③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자신이 납입하였을 것이나,
피고는 대금 납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 또한 B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이전까지
C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0,625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, 피고가 B 명의의 주식
10,625주 중 5,800주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
양도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창섭

